

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2006년 3월 3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

◎법률 제7871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特許異議申請·審判”을 “심판”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중 “出願審査의 請求人, 特許異議申請人”을 “출원심사의 청구인”으로 한다.

제6조중 “特許出願의 포기”를 “특허출원의 변경·포기”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음에 필요한 수권(授權)이 흠결된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는 때에는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特許出願의 포기”를 “특허출원의 변경·포기”로 한다.

제14조제4호중 “公休日(勤勞者の日制定에 관한法律에 의한 勤勞者の 날을 포함한다)”을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第7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許異議申請理由등의 補正期間, 제132조의3의 規定에 의한 審判의 請求期間”을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기간”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잃거나 사망한 경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0조제7호의 경우에는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제28조의3제1항중 “플로피디스크”를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國內”을 “국내 또는 국외”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登錄公告된 實用新案登錄出願”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實用新案法 第57條第1項”을 “「실용신안법」 제34조제1항”으로, “實用新案法 第71條第4項”을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으로, “特許協力條約”을 “「특허협력조약」”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各號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第29條第1項 各號의 1”을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第1項第1號 및 第3號”를 “제1항제1호”로, “그 취지를 기재한 書面을 特許出願과 동시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하고”를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하고,”로 한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를 제외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13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효로 된 그 특허의 출원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특허의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2년을 경과한 후 또는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제3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무효 또는 취하되거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각하된 때”를 “무효·취하 또는 포기되거나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 후단(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해당하여 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

여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52조제1항중 “特許出願으로 한 경우에는”을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各號”를 “각 호”로 하며, 동항제1호중 “實用新案法 第5條第3項”을 각각 “「실용신안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변경출원) ①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특허출원(이하 “변경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출원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변경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

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제29조제3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3. 제5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4.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출원을 하는 자는 변경출원서에 그 취지 및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⑤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30일의 기간은 「실용신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이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2조의3에서 규정한 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에 따라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⑥변경출원에 있어서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동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4호중 “특허여부의 결정”을 “특허여부의 결정, 실용신안등록여부의 결정”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工業所有權保護를 위한 파리條約”을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으로, “제136조제4항(제77조제3항 또는 제13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實用新案法 第8條第3項 및 第4項·同法 第39條, 디자인보호법 第45條 및 同法 第52條第3項”을 “제136조제4항(제13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실용신안법」 제7조제3항·제4항 및 제25조, 「디자인보호법」 제45조 및 제52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 전단중 “工業所有權保護를 위한 파리條約”을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으로, “實用新案法 第5條第3項 本文”을 “「실용신안법」 제4조제3항 본문”으로 하며, 동항 후단중 “實用新案法 第57條第1項”을 “「실용신안법」 제34조제1항”으로, “實用新案法 第71條第4項”을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2. 선출원이 제52조제2항(「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분할출원이나 제53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출원인 경우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선출원은 그 선출원이 실용신

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을 한 때에, 그 선출원이 특허출원인 경우에는”을 “선출원은”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2호중 “특허여부의 결정”을 “특허여부의 결정, 실용신안등록여부의 결정”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중 “特許出願 및 特許異議申請”을 “특허출원”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중 “專門調查機關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선행기술의 조사, 국제특허분류의 부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로 하고, 동조제3항중 “第1項에 規定된 專門調查機關”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資料調查”를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국제특허분류의 부여 등”으로 한다.

제58조의2의 제목중 “전문조사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전문조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을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9조제3항중 “第53條”를 “제53조제2항”으로, “二重出願”을 각각 “변경출원”으로 한다.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중 “第29條·제31조”를 “제29조”로 하며, 동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7.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그 특허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되어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제5항 및 제45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5조제6항중 “特許出願의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때, 第7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때”를 “특허출원의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때”로 한다.

제69조 내지 제7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8조제1항중 “特許出願 또는 特許異議申請의 審査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特許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이 확정되거나 審決이 확정될 때까지”를 “특허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하고, 동조제2항중 “特許出願의 査定 또는 特許異議申請에 대

한 決定”을 “특허출원에 대한 결정”으로 한다.

제78조의2를 삭제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중 “특허취소결정 또는 特許를 無效로 한다는 審決”을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로 하며, 동조제2항중 “특허료 및 수수료를 잘못 납부받은 때”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반환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제8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납부한 때
2.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추가납부한 때
3. 제8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보전한 때
4. 제8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
5.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료가 면제된 때

제8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02조제4항중 “實用新案法 第53條 또는 디자인보호법 第70條”를 “「실용신안법」 제32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70조”로 한다.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特許發明”을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으로, “그 發明의 實施事業을 하거나 그 事業의 準備를 하고 있는 경우 또는 實用新案法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維持決定에 근거하거나 기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登錄實用新案이 無效事由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考案의 實施事業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를 “그 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로 한다.

제118조제2항중 “제81조의2제4항”을 “제81조의3제5항”으로 한다.

제132조의3의 제목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등에 대한 심판)”을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으로 하고, 동조중 “특허거절결정, 특허취소결정”을 “특허거절결정”으로 한다.

제1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구범

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누구든지 다음 각 호(제2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5조·제29조·제32조·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42조제3항·제4항의 각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3.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4.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에 위반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조약의 규정에 위반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6.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7.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8.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제133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

허무효심판이 청구된 청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136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35조제1항중 “特許權者”를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로 한다.

제136조제1항 본문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단서중 “특허이의신청 또는 특허의 무효심판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를 “특허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係屬)되고”로 하며, 동조제6항 단서중 “취소결정에 의하여 특허가 취소되거나 심결에 의하여”를 “심결에 의하여”로 한다.

제1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77조제1항·제133조의2제1항”을 “제133조의2제1항”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77조제3항 또는 제13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을 “제13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으로 한다.

제140조의2의 제목중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등”을 “특허거절결정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을 “특허거절결정”으로, “各號”를 “각 호”로 하며, 동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2.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

4. 특허거절결정일자

제14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중 “當事者·參加人 또는 특허이의신청인”을 각각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며, 동조제6호중 “특허여부결정, 특허이의에 대한 결정”을 “특허여부결정”으로 한다.

제154조제8항중 “민사소송법 제143조”를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59조”로 한다.

제164조제1항중 “당해 審判事件과 관련되는 特許異議申請에 대한 決定 또는 다른 審判의 審決이 확정되거나”를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로 한다.

제165조제3항중 “請求人 또는 異議申請人”을 “청구인”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으로, “請求人 또는 異議申請人”을 “청구인”으로 한다.

제171조제2항중 “특허거절결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을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으로 한다.

제1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2조(심사의 효력) 심사에서 밝은 특허에 관한 절차는 특허거절결

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제176조제1항 및 제2항중 “특허거절결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을 각각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으로 한다.

제1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特許權(특허취소결정에 대한 審判에 의하여 取消가 확정된 特許權을 포함한다)”을 “특허권”으로 한다.

제9장에 제1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1조의2(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소송을 대리한 변리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변리사”로 본다.

제193조제1항중 “國語 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言語로 작성한 出願書·明細書”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명세서”로 한다.

제200조중 “第30條第1項第1號 및 第3號”를 “제30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01조제1항 본문중 “特許協力條約”을 “특허협력조약”으로, “2년6월”을 “2년 7월”로 하고, 동항 단서중 “特許協力條約”을 “특허협력조

약”으로, “補正후의 請求의 범위에 대하여서만 國語 翻譯文을”을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청구의 범위에 대한 국어 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의 범위에 대한 국어 번역문으로 대체하여”로 한다.

제202조제3항중 “實用新案法 第57條第2項”을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으로, “實用新案法 第59條第1項”을 각각 “「실용신안법」 제35조제1항”으로, “特許協力條約”을 “특허협력조약”으로, “實用新案法 第59條第4項”을 “「실용신안법」 제35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實用新案法 第71條第4項”을 각각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제204조제1항·제4항 및 제205조제1항·제3항중 “特許協力條約”을 각각 “특허협력조약”으로, “基準日까지”를 각각 “기준일까지(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인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때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제20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47조제2항의 규정은 국제특허출원의 보정이 가능한 범위에 관하여 이를”을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이 가능한 범위에 관하여 제47조제2항의 규정을”로 한다.

①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고(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기준일을 경과한 후(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인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 이후를 말한다)가 아니면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정(제204조제2항 및 제2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제209조의 제목중 “二重出願時期”를 “변경출원시기”로 하고, 동조중 “實用新案法 第57條第1項”을 “「실용신안법」 제34조제1항”으로, “二重出願”을 “변경출원”으로, “實用新案法 第30條第1項”을 “「실용신안법」 제17조제1항”으로, “同法 第59條第1項”을 “동법 제35조제1항”으로, “實用新案法 第71條第4項”을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제212조를 삭제한다.

제21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으로, “제133조제1항 각호”를 “제133조제1항 각 호”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14조제5항중 “第210條·第212條”를 “제210조”로 한다.

제215조중 “제65조제6항·제74조제4항”을 “제65조제6항”으로, “실용신안법 제40조제1항제2호”를 “「실용신안법」 제26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217조의 제목중 “審査·特許異議申請”을 “심사”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審査·特許異議申請”을 “심사”로

한다.

①특허출원·심사·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1.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행기술의 조사 등을 위하여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2. 제2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특허출원·심사·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3.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 원격근무를 위하여 특허출원·심사·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 제217조의2제1항중 “審査·特許異議申請”을 “심사”로, “기준에 해당하는 者”를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특허청장은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에 미달하여 특허청장이 요구한 시정조치에 불응한 경우에는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한다. 이 경우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3조의2 중 “특허여부결정·특허취소결정”을 “특허여부결정”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외의 처분의 불복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다.

제116조제2항중 “特許異議申請에 대한 決定 또는 審決”을 “심결”로 한다.

제228조중 “特許, 特許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을 “특허”로 한다.

제229조의2의 제목중 “전문조사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하고, 동조중 “전문조사기관 또는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을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특허문서전자화기관”으로 한다.

제2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6411호 특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제1호중 “제136조제9항”을 “제136조제9항 및 제140조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140조제1항·제5항”을 “제140조제1항·제2항·제5항”으로 한다.

제117조의 제목 및 본문, 제157조제2항 본문 및 제185조의 제목중 “民事訴訟法”을 각각 “「민사소송법」”으로 한다.

제13조, 제154조제7항, 제165조제2항, 제178조제2항, 제185조, 제188조의2제1항 및 제232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소송법」”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단서, 제10장의 제목, 제193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제1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198조의2제1항, 제199조제1항, 제202조제2항, 제204조제3항, 제207조제1항, 제211조 및 제214조제1항·제3항·제4항중 “特許協力條約”을 각각 “「특허협력조약」”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단서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기술이전촉진법”을 “「기술이전촉진법」”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國有財産法”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제65조제5항 후단중 “民法”을 “「민법」”으로 한다.

제83조제2항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제96조제2항중 “藥事法”을 “「약사법」”으로 한다.

제109조중 “發明振興法”을 “「발명진흥법」”으로 한다.

제115조중 “行政審判法”을 “「행정심판법」”으로, “行政訴訟法”을 “「행정소송법」”으로 한다.

제165조제6항중 “民事訴訟費用法”을 “「민사소송비용법」”으로 한다.

제188조의2제1항중 “法院組織法”을 “「법원조직법」”으로 한다.

제232조제4항중 “非訟事件節次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제6조, 제7조의2, 제11조제1항, 제20조제7호, 제21조제6호, 제29조제1항·제3항·제4항중 「실용신안법」 관련 개정부분, 제31조, 제36조제3항, 제49조, 제52조,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항·제4항중 「실용신안법」 관련 개정부분, 제56조제1항,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제3항, 제62조, 제63조의2, 제64조, 제87조제2항, 제88조제4항, 제102조제4항중 「실용신안법」 관련 개정부분, 제104조제1항, 제133조제1항, 제133조의2제4항, 제135조제1항, 제154조제8항, 제193조제1항, 제202조제3항중 「실용신안법」 관련 개정부분, 동조제4항, 제204조 및 제205조중 기준일 관련 개정부분, 제208조제3항, 제209조, 제213조, 제215조중 「실용신안법」 관련 개정부분, 제22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2항, 제4조, 제15조제1항, 제35조, 제55조제3항중 특허이의신청 관련 개정부분, 제57조제1항, 제65조제6항, 제69조 내지 제78조, 제78조의2, 제84조제1항,

제132조의3, 제136조제1항·제6항, 제137조제1항, 제140조의2, 제148조, 제164조제1항, 제165조제3항·제4항중 특허이의신청 관련 개정부분, 제171조제2항, 제172조, 제176조제1항·제2항, 제181조제1항, 제212조, 제214조제5항, 제215조, 제217조제1항중 특허이의신청 관련 개정부분, 동조제2항, 제217조의2제1항·제2항중 특허이의신청 관련 개정부분, 제224조의2제1항중 특허이의신청 관련 개정부분, 제226조제2항, 제228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1호, 제30조제1항 및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허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특허취소결정,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허무효심판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제7호 및 제8호를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후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변리사의 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19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변리사가 소송 대리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특허등록·특허권·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제13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제1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특허이의신청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07년 7월 1일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한 특허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특허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출원공개 전에 특허심사가 이루어지는 등의 특허심사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고, 특허출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특허심사 및 특허심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중출원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변경출원제도를 도입하며, 특허이의신청제도를 특허무효심판제도로 통합하는 등 특허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실용신안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6년 3월 3일

국무총리 이 해찬

국무위원
산업자원부 정세균
장관

◎법률 제7872호

실용신안법 전부개정법률

실용신안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실용신안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2. “등록실용신안”이라 함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을 말한다.